

인권경영 정책

제1장 개요

1. 목적

아이에스동서(이하 “회사”라 한다.)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실천하며, 기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정책은 UN 세계인권선언(UDHR),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UNGPs),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및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 사업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2. 준수 의무 및 적용 범위

회사와 임직원은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든 경영 과정에서 아래의 원칙을 준수하며, 지속가능한 인권경영을 실천합니다. 본 정책은 각 개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모든 사업장 및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사 등)에게 적용됩니다.

3. 역할

아이에스동서의 ESG위원회를 인권경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지정하며 인권경영 업무는 ‘인사·노무 관련부서’가 전담하여 담당한다. 관련부서는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인권실사 프로세스 운영, 인권교육 실시 등 아이에스동서의 인권경영 관련 실무를 추진한다.

제2장 정책 원칙

1. 강제노동 금지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근로(노예, 인신매매 등 모든 비자발적 근로)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최저 근로연령(15세 미만)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3. 인도적 대우 보장

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차별, 학대, 폭언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차별금지

회사는 인종, 성별, 연령, 국적, 종교, 장애,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5. 노동법규 준수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노동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정규, 초과 근로시간, 휴무 및 임금 관련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또한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6. 산업안전 보장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회사는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노동, 환경, 윤리 원칙을 준수하며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환경권 보장

회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9. 지역주민 인권 보호

회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10.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객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실사 프로세스

1. 리스크 식별

- ① 회사는 회사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실사 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는 인권 실사 또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필요 시 이해관계자 대상 면담, 인터뷰 등을 추가 요청할 수 있다.

2. 결과 분석 및 개선 조치

- ① 주관부서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는 주관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② 회사는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식별된 인권 위협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개선방안 도출 및 예방 활동

- ① 주관부서는 인권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 및 전략을 수립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 리스크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4. 모니터링 체계

- ① 회사는 시정 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거나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시행하여 인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② 회사는 이해관계자(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고객 등)로부터 인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및 실행 계획에 반영한다.

제4장 구제절차

1. 고충처리 채널

회사는 인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인권과 관련된 문제나

고충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모든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2. 고충처리 절차

회사는 인권 관련 고충이 접수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내부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절차를 운영한다. 고충 제기부터 처리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까지의 전 과정은 인권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수행되며, 필요 시 관련 부서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① 고충 접수 → ②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착수 → ③ 해결방안 도출 및 조치 → ④ 처리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 ⑤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보호 조치 및 익명성 보장

회사는 신고자, 피해자, 협조자 등 관련된 누구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기문

